

의안번호	제 642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4년 7월 3일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2
----------	-----

제출연월일 : 2024. 7. 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단위 충북행복교육지구를 지역 간 상호 개방하고 연계하여 온마을배움터로 확장·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공교육 혁신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기존)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용어 신설, 변경

- 온마을배움터 용어 신설
- 마을,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생태계 등의 용어는 온마을배움터로 확대
-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변경

다. 온마을배움터의 상호 개방 조항 신설

라.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4년→1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타

1) 입법예고(기간:2024. 5. 31. ~ 6. 20., 20일간)

- 조례명 수정에 대한 의견 제출: 2명, 수용
- 해석 오류에 기반한 의견 제출: 2기관, 미수용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타 조례에 따라 추진가능, 미수용

※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3.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4. 공교육 강화 및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성장과 조화를 추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온마을배움터”란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장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
2.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
3.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 관련 연구 및 조사
6.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
7.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온마을배움터의 지정)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별 온마을배움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온마을배움터의 상호 개방)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온마을배움터 행정구역 경계를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온마을배움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3. 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5. 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6.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7.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관련 전문가, 마을주민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본다.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4.>
- ②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 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 · 도서관 · 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2조의2(지도 · 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 · 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 ·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본조신설 2015. 3. 27.]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19.] [충청북도조례 제4930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

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
5.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교육감은 수탁

기관 선정 공고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6.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8.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6조의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운영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12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붙여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

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종합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심사를 할 때 반영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자 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을 유지하면서 사업 운영의 행정구역 경계를 개방하는 온마을배움터로의 확장이므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김명숙